

중 국

[판례 분석]

학술논문 매매·투고 저작권 침해 및 공동책임 판단 기준

2026. 09. 09.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학술논문을 제3자 명의로 매매·수정·투고·공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과정에서 각 행위자들의 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침해행위를 구성하면 공동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 또한 저자나 교신저자의 공동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교신저자라는 형식적 지위만으로 바로 공동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투고 관여 여부와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이 구체적 증거로 확인되어야 함.

1. 현황

학술논문은 문자·도표·이미지 등의 표현으로 구성된 연구성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 논문이 제3자에게 매매된 뒤 다른 사람 명의로 수정·투고·공표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유사성 뿐 아니라 논문 매수자, 실제 수정·투고자, 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실제 관여 여부와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실험을 기반으로 하는 의약학 연구논문에서는 실험데이터와 실험조건의 정확성이 논문의 결론과 학술적 평가에 직접 연결될 수 있어 변경행위가 수정권 침해에 그치는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이르는지 문제될 수 있음. 또한 온라인 학술출판에서는 투고자가 출판사에 온라인 공개를 허락하는 행위와 출판사가 실제로 논문을 인터넷에 제공하는 행위를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쟁점이 됨. 본 문에서는 학술논문의 무단 수정, 매매, 투고로 인해 발생한 저작권 침해 분쟁사례를 통해 학술논문 매매·투고 과정에서 공동 저작권 침해의 성립, 수정권과 동일성유지권의 구별,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 및 논문 철회를 포함한 침해정지 책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살펴봄.

2. 판례소개

사건 번호	1심	(2023)浙02民初611号
	2심	(2024)浙民终1090号

관할 법원	1심	저장성 Ningbo시 중급인민법원(浙江省宁波市中级人民法院)		
	2심	저장성 고급인민법원(浙江省高级人民法院)		
당사자	A씨		1심: 원고	2심: 상소인
	B씨		1심: 피고	2심: 상소인
	C씨, D씨		1심: 피고	2심: 피상소인
	E씨		1심: 피고	
핵심 쟁점	1심	1. A 씨의 논문과 피고의 논문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성립 여부 2. B 씨, E 씨, C 씨, D 씨의 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3.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 법적 책임		
	2심	1. B 씨의 저작권 침해 여부, B 씨와 E 씨의 공동침해 여부 및 C 씨, D 씨의 행위가 B 씨, E 씨와 공동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2. 1심이 판결한 법적 책임 및 배상금의 적절성		
판결 결과	1심	1. A 씨의 논문과 피고의 논문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성립함. 2. B 씨, E 씨의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3. B 씨는 A 씨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사과성명을 게재해야 함. B 씨는 A 씨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45,000위안을 배상해야 하며, E 씨는 15,000위안을 배상해야 함.		
	2심	1. B 씨와 E 씨는 공동으로 A 씨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이에 대해 D 씨의 공동침해가 인정되지만 C 씨의 공동침해는 인정되지 않음. 2. B 씨, D 씨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사과성명을 게재하여 침해영향을 제거해야 함. B 씨는 A 씨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75,000위안을 배상해야 하며, D 씨는 그 중 20,000위안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이 있음. 또한 E 씨는 A 씨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15,000위안을 배상해야 함.		
관계 법령	· 민법전(民法典) 제123조, 제179조 · 저작권법(著作权法) 제3조 제1호,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最高人民法院 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9조,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최종 판결일	2025년 5월 26일			

(1) 사건 개요

A 씨는 2014년 국가자연과학기금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의약학·생명과학 분야의 실험 연구논문(이하 "사건 논문"이라 함)을 E 씨 등과 함께 작성하였음. A 씨는 2018년 8월 사건 논문을 해외 학술지에 투고하였다가 같은 달 투고를 철회함. 한편 E 씨는 사건 논문의 제목, 일부 내용 등을 임의로 수정·변경한 논문(이하 "분쟁 논문"이라 함)을 생명과학 관련 사업을 하는 Z 회사에 판매하였음.

박사과정 연구생이던 B 씨는 학위 취득에 필요한 연구성과를 마련하기 위해 생명과학 관련 사업을 하는 Z 회사와 업무위탁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SCI 저작권 양도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고 54,000위안을 지급하였음. B 씨는 자신의 지도교수인 C 씨와 같은 연구실 선배인 D 씨 등의 정보를 Z 회사에 제공하였음. 그 후에 E 씨는 B 씨를 제1저자, C 씨와 D 씨를 교신저자로 표시하여 분쟁 논문을 Z 회사가 제공한 이메일을 통해 또 다른 해외학술지에 투고하였고 그 결과 분쟁 논문은 해당 학술지 웹사이트와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었음.

이에 A 씨는 분쟁 논문이 사건 논문과 전체 구조, 문자 표현, 도표 및 실험데이터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자신의 허락 없이 수정·투고·공표되었다고 주장하며, B, C, D, E 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2) 핵심 쟁점

본 안건에서 A 씨는 2심에서 B 씨가 분쟁 논문을 매수·공표하였고, 교신저자인 C 씨, D 씨도 투고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므로 공동침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함. 또한 철회에 필요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1심 배상액도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함. 이에 B, C, D 씨는 E 씨가 사건 논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저작권자이고 수정·투고 역시 E 씨와 중개회사가 진행했으며 C, D 씨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함. B 씨 역시 사건 논문의 침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철회하는데 노력했다고 주장함.

배상액과 관련하여 B 씨 등은 A 씨가 실제 손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주된 침해행위자인 E 씨보다 B 씨의 배상 부담이 더 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또한 B 씨는 이미 퇴학 처분을 받아 논문으로 이익을 얻지 못했고 A 씨에게도 연구성과 관리상 과실이 있으며 중개회사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E 씨에게 15,000위안만 청구한 점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함. 이와 같은 주장과 항변을 종합하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음.

- ① B 씨와 E 씨의 논문 매매·수정·투고 행위가 어떠한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두 사람이 공동침해를 구성하는지 및 C 씨와 D 씨에게도 공동침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②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 법적 책임

(3) 법원의 판단

1) 저작권 침해 및 공동침해 여부

1. 사건 논문과 분쟁 논문의 실질적 유사성

① 1심 법원의 판단

사건 논문과 분쟁 논문을 비교한 결과 두 논문이 전체 구조, 문자 표현, 도표 및 실험데이터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함. E 씨 역시 자신과 논문 중개회사가 사건 논문의 제목, 황련·후박 약재의 산지,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제공기관 등을 변경하고, 체중 변화와 바이러스 부하 지표를 추가하였을 뿐 관련 데이터 및 각종 실험 이미지 등이 사건 논문과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음.

② 2심 법원의 판단

2심에서 B 씨는 분쟁 논문과 사건 논문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음. 따라서 2심 법원은 양 논문의 실질적 유사성을 전제로 B 씨의 침해 여부와 B 씨·E 씨의 공동침해 여부를 판단함.

2. B 씨의 저작권 침해 및 B 씨와 E 씨의 공동침해 성립 여부

① 1심 법원의 판단

B 씨가 A 씨의 허락 없이 분쟁 논문을 공표하고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였으므로 A 씨의 공표권과 서명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함. E 씨에 대해서는 사건 논문의 제목, 약재 산지, 바이러스 제공기관 등을 변경하고, 논문을 회사에 판매하여 타인이 발표하도록 하였으므로 수정권과 공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봄. 다만 B 씨와 E 씨가 사건 논문의 내용, 관점, 형식 등을 왜곡·변조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고, 두 사람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논문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동일성유지권과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음.

② 2심 법원의 판단

B 씨는 학위 취득에 필요한 연구성과를 마련하기 위해 논문 중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분쟁 논문을 취득하고 자신을 제1저자로 표시하여 공표하였음. 이러한 논문 대필·대리발표 계약이 '연구 신의성실원칙'에 반하고 불법적인 목적과 사회공공의 이익 침해를 이유로 무효에 해당함. B 씨가 회사의 논문 매입 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논문으로 실제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등의 사정은 저작권 침해를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 E 씨는 분쟁 논문의 판매자로서 A 씨의 허락 없이 논문을 양도하고, 수정·투고하였으며 B 씨는 이를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공표하였음. 이와 같이 두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하나의 침해과정을 공동으로 실행하였으므로 공동침해를 구성함. 따라서 서명, 수정, 공표 등의 개별 행위를 누가 직접 실행하였는지에 따라 침해된 권리를 서로 다르게 판단한 1심 판결은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정정함.

3. 서명권 침해 여부

① 1심 법원의 판단

B 씨가 분쟁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한 행위는 A 씨의 서명권을 침해하였음. 반면 E 씨에 대해서는 직접 자신의 이름을 분쟁 논문에 표시한 행위가 없으므로 서명권 침해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음.

② 2심 법원의 판단

B 씨와 E 씨가 공동침해를 구성하므로 개별적으로 누가 서명 행위를 실행했는지를 기준으로 권리침해를 달리 판단할 수 없음. 따라서 B 씨와 E 씨가 Z 회사를 통하여 분쟁 논문을 매매하고 B 씨, C 씨, D 씨의 이름을 저자로 표시한 행위는 A 씨의 서명권을 침해함.

4. 공표권 침해 여부

① 1심 법원의 판단

B 씨와 E 씨가 A 씨의 허락 없이 분쟁 논문을 해외 학술지에 투고·공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논문을 공개하였으므로 A 씨의 공표권을 침해하였음.

② 2심 법원의 판단

공표권은 저작물이 일단 공개되면 소진되는 일회적인 권리이고 이러한 공표권의 일회적 소진은 저작자가 먼저 저작물을 공표한 이후 타인이 다시 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공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 본 안건에서 A 씨는 2018년 사건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였다가 철회하여 아직 작품을 공표하지 않은 상태였음. 따라서 B 씨와 E 씨가 A 씨의 허락 없이 분쟁 논문을 투고하여 공표한 행위는 A 씨의 공표권을 침해함.

5. 수정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① 1심 법원의 판단

E 씨가 사건 논문의 제목, 약재의 산지,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제공기관 등을 변경한 행위가 A 씨의 수정권을 침해함. 그러나 이러한 변경이 사건 논문의 내용, 관점, 형식 등을 왜곡하거나 변조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음.

② 2심 법원의 판단

수정권과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작품의 이용방식, 변경 정도, 변경으로 인해 작품의 평가가 낮아지거나 저자의 명예가 훼손되는지 여부 및 저작물의 유형과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저작자의 허락 없는 변경이 아직 왜곡·변조의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권 침해가 성립하지만, 저작물의 핵심 표현요소가 크게 변경되어 내용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저자가 표현하려는 관점이나 사상·감정이 왜곡·변조된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성립함. 따라서 동일한 침해행위에 두 권리의 침해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음. 본 안건에서 공동침해자인 B 씨와 E 씨는 H1N1 바이러스 제공기관과 일부 실험데이터를 변경하고, 실제 관련 실험이 이루어진 저장 소재 대학 연구실을 실험을 수행하지 않은 광저우 소재 대학 연구실로 변경하였음. 의약학 연구논문에서 실험데이터의 정확성이 연구결과의 임상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근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경이 허위 실험데이터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고 논문 전체 결론의 정확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 A 씨가 사건 논문을 통해 표현하려던 관점을 왜

곡·변조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됨. 따라서 1심 법원의 수정권 침해 판단을 정정하고 동일성 유지권 침해를 인정함.

6.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 여부

① 1심 법원의 판단

실제로 분쟁 논문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주체는 분쟁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출판사이고, B 씨와 E 씨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분쟁 논문을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두 사람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음.

② 2심 법원의 판단

디지털 방식이 공중이 관련 저작물을 이용하는 주요 수단인 된 상황에서 학술지나 출판사는 일반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식으로 투고자가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출판사에 이용허락하도록 요구한다고 보아야 함. 본 사건에서도 출판사의 투고안내에 여러 이용허락 방식이 규정되어 있었고, B 씨가 지급한 게재료에 대응하는 방식은 '개방형 이용허락' 방식으로 출판사가 학술지 웹사이트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분쟁 논문을 게재·수록하는 데 동의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출판사에 이용허락한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실제로 논문을 온라인을 통해 전파한 주체가 출판사라고 하더라도 B 씨와 E 씨가 A 씨의 허락 없이 출판사에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이용허락한 행위 자체가 A 씨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함. 결론적으로 B 씨와 E 씨가 공동으로 A 씨의 서명권,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및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였음.

7. C 씨와 D 씨의 공동침해 책임 여부

① 1심 법원의 판단

C 씨와 D 씨가 모두 분쟁 논문의 교신저자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분쟁 논문의 구매, 작성, 투고 과정에 관여하거나 그 과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특히 C 씨와 D 씨의 신원정보 및 연락처는 B 씨가 Z 회사에 제공하였고, 두 사람이 관련 서류에 실제로 서명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C 씨와 D 씨의 침해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② 2심 법원의 판단

C 씨의 경우 B 씨가 Z 회사에 제공한 C 씨 명의의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실제로는 B 씨가 사용하는 연락처였고, 실제 투고용 이메일 역시 회사가 E 씨에게 제공하여 E 씨가 사용하였음. C 씨가 해당 이메일을 사용하거나 해당 이메일을 이용한 투고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투고서류나 동물윤리 관련 자료에 실제로 서명하였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음.

또한 대학의 지도교수 책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일반적인 연구생 지도·감독 의무는 학술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학교 내부에서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지도교수가 학생의 저작권 침해에 당연히 민사상 공동침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적 근거는 아님. 따라서 C 씨가 분쟁

논문의 수정·투고에 관여하거나, 그 공표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C 씨의 공동침해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반면 D 씨의 경우 출판사가 투고용 이메일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D 씨가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로 분쟁 논문의 투고·채택 관련 이메일을 계속 참조 전송하였음. D 씨의 연구경력, 같은 이메일을 다른 출판사의 논문 투고에 사용한 사실 및 논문 발표 경험 등을 고려하면 D 씨가 교신저자의 권리·책임과 SCI 학술지의 투고·채택 절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됨.

이에 자신의 이름이 분쟁 논문의 교신저자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투고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적어도 B 씨와 E 씨의 전체 투고 과정을 알았어야 함. 또한 D 씨가 실제로 관련 이메일을 열어 읽지 않았다는 사정은 항변사유가 될 수 없음. 따라서 D 씨는 B 씨와 공동침해를 구성함.

2) 법적 책임

1. 침해정지 및 논문 철회 책임

① 1심 법원의 판단

B 씨가 여러 차례 출판사에 논문 철회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고려하면 B 씨는 이미 적극적으로 철회 의무를 이행하였음. 실제로 출판사가 논문을 철회할 것인지 여부는 B 씨가 통제할 수 없으므로 A 씨의 논문 철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또한 공표권은 한 번 행사되어 작품이 공중에게 공개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일회적인 권리이므로 이미 이루어진 공표에 대한 침해정지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음.

② 2심 법원의 판단

A 씨가 E 씨에게 별도의 침해정지 청구를 하지 않았고 분쟁 논문에도 E 씨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1심 법원이 E 씨에게 직접 침해정지 책임을 명하지 않은 것은 적절함. 다만 E 씨는 B 씨 등이 침해정지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함.

분쟁 논문이 온라인으로 계속 제공되는 한 서명권, 동일성유지권 및 정보네트워크전파권에 대한 침해상태가 지속되므로 B 씨와 D 씨에게 이에 대한 침해정지 책임이 있음. 반면 저작물이 이미 공중에게 공개된 상태에서는 공표권 침해를 정지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므로 공표권 자체에 대한 침해정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논문 철회에 관해서는 당사자들과 출판사의 이메일을 검토한 결과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실하고 출판사의 철회 요구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이 분쟁 논문이 아직 철회되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단순히 여러 차례 철회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정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또한 분쟁 논문이 먼저 공개된 상태가 계속 되면 A 씨가 사건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할 때 중복률 등의 문제로 게재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B 씨와 D 씨는 다시 출판사에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 침해정지 책임을 부담함. C 씨는 공동침해자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분쟁 논문의 제1교신저자로 표시되어 있어 철회 절차에 필요한 협력을 해야 함.

2. 사과 및 영향 제거 책임

① 1심 법원의 판단

B 씨가 A 씨의 공표권과 서명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고 침해행위의 영향 범위와 영향 제거의 범위가 서로 상응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B 씨의 사과 및 영향 제거 책임을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B 씨에게 과학망¹⁾에 사과성명을 게재하게 함.

② 2심 법원의 판단

B 씨, D 씨, E 씨가 A 씨의 공표권, 서명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A 씨의 명예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으므로 침해행위의 영향 범위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B 씨와 D 씨의 사과 및 영향 제거 책임을 인정하고 과학망에 사과성명을 게재하여 영향을 제거하도록 함.

3. 손해배상 책임 및 배상액

① 1심 법원의 판단

A 씨가 입은 실제 손실이나 B 씨, E 씨가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법정손해배상 방식을 적용함. 사건 논문의 유형과 독창성, 침해행위의 성질과 범위, 분쟁 논문의 실제 가치 및 A 씨가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등을 고려하여 B 씨에게 45,000위안, E 씨에게 15,000위안의 배상금을 명령함.

② 2심 법원의 판단

A 씨의 실제 손실, B·D·E 씨의 위법소득 및 참고할 합리적인 이용허락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정손해배상을 적용함. 배상금 산정에 있어서 사건 논문이 국가자연과학기금 지원 과제의 연구성과이고 분쟁 논문이 SCI 학술지에 채택된 점에서 상당한 독창성과 학술적 가치가 있다는 점, B 씨가 박사과정 연구생으로서 논문 매매와 같은 학술부정행위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필·대리발표를 의뢰하여 침해의 주관적 고의가 명백한 점, B 씨가 분쟁 논문의 구매를 위해 54,000위안을 지급하고 별도의 게재료까지 부담한 점, 분쟁 논문의 선행 공표로 인해 A 씨가 자신의 사건 논문을 발표할 기회를 상실한 점을 고려함.

반면 D 씨는 공동침해 책임은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침해를 실행하려는 고의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사실을 알게 된 뒤 철회 등 손해 확대 방지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하며 E 씨는 사건 논문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으로서 창작에 일정한 기여가 있는 점도 참작함. 이 밖에 2심에서 동일성유지권과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가 추가로 인정된 점도 함께 고려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B 씨에게 75,000위안을 배상하도록 하고 D 씨는 그중 20,000위안에 대하여 B 씨와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E 씨의 배상액은 15,000위안으로 정함.

1) 과학망은 중국의 과학·고등교육 분야 전문 웹사이트 중 하나임.

3. 판례분석

1) 논문 매매·투고 과정의 공동침해 판단

본문 판례의 공동침해 판단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하나는 여러 행위자가 논문의 매매·수정·투고·공표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하나의 침해결과를 실현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시된 자가 실제 침해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임.

먼저 B 씨와 E 씨에 대해서 2심 법원은 논문의 매도·수정·투고와 매수·명의공표가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각 행위가 하나의 침해과정을 향한 분업·협력 관계를 이룬다는 점을 근거로 공동침해를 인정함. 이에 따라 서명·수정·공표 등의 개별 행위를 누가 직접 실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각자의 침해 권리를 달리 판단한 1심의 접근을 정정함. 이는 공동침해가 성립한 경우 책임범위를 개별 행위자의 직접 실행행위에 한정하기보다 공동행위 전체가 침해한 권리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줌.

반면 C 씨와 D 씨에 대한 판단에서는 교신저자라는 형식적 지위보다 침해과정과 해당 당사자를 연결하는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함. C 씨에 대해서는 실제 투고 관여나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여 공동침해 책임을 부정한 반면 D 씨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로 투고 관련 연락이 계속 이루어진 점과 학술지 투고 경험 등을 결합하여 적어도 투고 과정을 알았어야 한다고 판단함. 따라서 동일하게 교신저자로 표시되었더라도 침해행위에 대한 실제 관여 또는 인식·인식 가능성이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공동침해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특히 지도교수인 C 씨에 대한 판단은 연구윤리상 지도·감독 책임과 민사상 저작권 침해 책임을 구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법원은 대학 내부규정이나 일반적인 지도교수의 의무가 학술부정행위에 대한 학교 내부 책임의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학생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공동침해 책임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 따라서 지도교수나 교신저자라는 지위만으로 책임을 추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침해행위와 해당 당사자의 관여 또는 인식 가능성을 연결하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본문 판례는 공동침해 판단에서 형식적인 저자 지위보다 침해과정에서 수행한 실질적인 역할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관여·인지 가능성을 중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적극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하나의 침해과정을 실현한 경우에는 공동행위 전체를 기준으로 책임범위를 판단하는 한편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시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침해행위에 대한 관여 또는 인식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공동침해 책임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의약학 논문에서 수정권과 동일성유지권의 구별 기준

본문 판례에서 1심과 2심의 결론을 갈라놓은 핵심은 변경행위의 존재 자체보다 그 변경이 저작물의 핵심 표현과 연구 결론에 미치는 질적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있었음. 2심 법원

은 변경의 정도뿐 아니라 저작물의 유형과 특성, 변경된 요소의 중요성 및 그 변경으로 인해 저자가 표현하려는 내용이 왜곡·변조되는지를 종합하여 수정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구별하였음. 또한 동일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수정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동시에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두 권리의 경계를 구체화하였음.

특히 본문 판례는 변경된 부분의 양보다는 해당 요소가 저작물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의약학 연구논문에서 실험기관과 실험데이터는 연구결과의 정확성과 임상 활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실제 실험기관을 실험을 수행하지 않은 기관으로 변경하고 일부 실험데이터를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를 법원이 허위 실험데이터 제공으로 평가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한 것은 이러한 질적 판단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임.

따라서 본문 판례는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판단할 때 단순히 '얼마나 많이 변경되었는가'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무엇이 변경되었고 그 요소가 저작물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며 그 변경이 저작물의 핵심 표현과 저자가 제시하는 관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함께 살펴야 함을 보여줌. 외형적으로 일부 데이터나 정보만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요소가 저작물의 핵심 표현이나 결론의 정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음.

4. 시사점

본문 판례는 학술논문 매매·투고 과정의 공동침해를 형식적 저자 지위보다 실제 역할 분담과 관여·인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의약학 논문의 실험기관·데이터 변경은 그 양보다 연구 결론과 핵심 표현에 미치는 질적 영향을 기준으로 수정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판례
(2024)浙民终1090号